

증권 대차거래(전문투자자 차입자용) 핵심(요약)설명서

원금손실가능상품	본 설명서는 증권대차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증권대차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 입니다.
	[주의] 본 상품에 대해 고객님의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증권대차거래는 주식보유자(대여자)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해당 주식을 차입하고자 하는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차입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일종의 소비대차 계약을 의미합니다. 대차거래 규정을 받으며, 대여자는 보유주식을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실제 주식이 대여 된 기간만큼 대여수수료를 수취, 차입자는 주식을 빌려서 다양한 운용 전략 등을 펼치며 대여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수수료는 종목, 수량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별도의 만기일 설정없이 상호간 언제든지 상환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고객대차거래”는 개인 및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고객이 해당주식 (상장 되어있는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을 당사에게 대여하고 당사는 일정기간 후 고객에게 반환하는 거래입니다.
 - “증권 대차거래 (전문투자자 차입자용)”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당사가 해당주식 (상장 되어있는 국내주식)을 전문투자자에게 대여하고 전문투자자는 일정 기간 후 회사에게 반환하는 거래입니다.
- 증권대차거래와 신용거래대주와 비교시 경제적효과는 비슷하지만 감독규정, 수수료, 만기일 내용이 아래와 같이 다르오니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거래대주 : 신용용자 및 대주거래 규정적용 / 상장된 국내주식 중 회사가 정한 종목 / 수수료는 대부분일률적임 / 일반적인 신용공여와 마찬가지로 2~3 개월로 한정
 - 증권대차거래 : 대차거래규정 적용 / 상장된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전문투자자 차입자용: 상장된 국내주식만 가능) / 수수료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 만기지정없이 언제든지 상환청구 및 해지가능

■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사항 [민원 우려로 숙지 필요사항]



- ①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차입 중인 주식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증권 권리는 모두 원 소유자에게 반환합니다.



- ① 투자위험등급 : 증권대차거래는 주식을 상대방에게 차입하거나 대여는 거래로 시장상황에 따라 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 등급 [초고위험]입니다.
- ② 당사는 투자위험등급을 1 등급(초고위험) ~ 5 등급(초저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 상품의 위험등급은 1 등급(초고위험)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며 원금의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 투자대상자산 및 수익률 변동성, 위험도에 따라 1 등급으로 분류됨)



- ① 개인/법인 전문투자자 대상이며 최대 5억원이내 거래 가능합니다
- ② 차입가능종목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한해 대여가 가능합니다
(단, 차입공매도 부분 개시로 2021.05.03 이후 현재는 KOSPI200, KOSDAQ150으로 한정)
- ③ 고객별 차입전용계좌는 1계좌로 한정되면 당사에 대여약정된 계좌를 보유하며 신용대주약정과 중복 불가합니다
- ④ 담보유지비율은 최소 140%이상이며, 담보 부족시 추가담보요청 및 납입기일 초과시 반대매수가 발생합니다.
- ⑤ 차입주식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매월 발생하며 연체시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
- ⑥ 차입주식에 대한 권리 발생시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 ⑦ 공매도에 따른 보고의무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통해 고객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⑧ 대차거래 약정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유주식이 대여 중인 상태일 경우 상환 청구 후, 상황이 완료되어야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지 하실 경우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매수상환의 경우 매수일 포함 3영업일, 현물상환의 경우 즉시 상환 가능하고 영업점 내방 및 유선을 통해 해지 가능합니다.)



고객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영업점 • 고객센터 (TEL : 1588-6800) •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증권 대차거래 설명서(전문투자자 차입자용)

■ 대차거래

1. 차입거래

여기서 말하는 차입거래는 일반적인 대차거래로서 대여자(당사)가 증권을 차입자(고객)에게 대여하고 차입자는 일정 기간 후 동종·동량의 증권을 회사에게 반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회사로부터 주식을 차입한 고객은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주식시장을 통해 공매도 할 수 있으며, 공매도 하지 않은 차입주식은 계좌잔고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이때, 당사와의 대차거래가 체결되기 전까지 그 법적 소유권은 당사에 있으며 대차거래가 체결된 후에는 차입자에게 그 법적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단, 고객이 차입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 무상증자, 유상증자 등 경제적 수익 증권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2. 차입공매도와 신용대주(유통대주)

차입공매도와 신용대주의 경제적 효과는 비슷하지만, 제도상의 운영방법은 매우 다릅니다.

유통대주는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의 한 종류로서, 고객이 공매도한 주식을 금융회사가 결제 해줌으로써 용자가 발생하는 신용거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용공여와 마찬가지로 용자만기일이 2~3개월로 한정되어 있고 종목별 대주 이자율도 비슷합니다.

차입공매도는 일반적인 주식대차거래로서, 회사는 고객에게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주식을 차입한 고객은 계좌에 차입주식을 보유하여 원하는 시기에 주식시장을 통해 공매도 할 수 있습니다. 매도하지 않고 남아있는 주식은 회사로 언제든지 중도 상환이 가능하며 추후에 공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매도 하지 않고 차입 주식이 계좌에 남아 있을 경우 불필요한 차입(대여)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고, 배당등의 권리가 발생할 경우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금액만큼 추가부담의 위험이 생기므로 가급적 상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주의 이자율은 대부분 일률적인데 비해, 차입(대여)수수료율은 종목별 시장수수료율에 따라 수시로 변동됩니다.

차입공매도의 주식대차거래는 기관간 대차거래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만기일 설정없이 상호간에 언제든지 중도상환요청 및 상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손실발생, 추가 수익 기대 등의 이유로 고객의 상환 의사가 없다 하여도 회사가

중도상환요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변경된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고객 계좌에서 반대매수를 통하여 상환 받게 됩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대여한 주식은 회사가 다른 기관/고객들로부터 차입한 주식으로서, 회사가 해당주식에 대해 중도상환 요청을 받을 경우, 또는 각종 권리발생(주식매수청구권, 의결 권행사, 유무상증자, 현금, 주식배당 등)시에는 부득이 대부분 중도상환 요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입공매도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차입공매도와 유통대주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신 후 원하시는 거래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차입가능종목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 중 회사가 대여가능한 종목이 가능합니다. 단, 거래소에서 지정된 공매도 불가종목, 코넥스, ELW, ETN, 파생 및 기타 ETF, K-OTC, 자사주, 스펙, 거래정지, 비상장종목은 차입이 불가하며 이외에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 증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차입공매도 부분개시로 2021.05.03 이후 현재 KOSPI200, KOSDAQ150 종목 만 차입 가능)

4. 차입거래기간 및 한도

가. 차입거래의 약정체결 및 총 한도는 고객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나. 고객별 총 한도 내에서 증액 및 감액 정정이 가능합니다.

- 거래한도 : 전문투자자 차입한도 5 억원
- 거래기간 : 만기일 별도 설정 없음 (단, 수시 중도상환요청 및 상환이 가능)

5. 차입약정신청 및 차입실행

가. 차입약정신청은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고객별 1 계좌만 단독으로 약정 신청가능하며 당사에 대여 약정 된 계좌를 1 개이상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입약정신청 계좌는 차입 약정 이외의 추가 약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당사의 신용대주약정과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나. 차입가능시간은 08:30 부터 15:30 까지 가능합니다.

다. 영업점 관리직원을 통하여 차입 약정 및 신청 가능합니다.

라. 차입신청시간 기준에 따라 차입신청수량이 체결됩니다.

- 마. 차입한 증권에 대해서는 매도만 가능하고, 해당 증권의 출고는 불가합니다.
- 바. 고객은 당사가 제공한 종목을 차입하면 잔고에는 "차입"종목으로 조회 됩니다.

6. 차입거래 담보설정 및 평가방법

- 가. 잔고에 보유한 계좌에 보유한 현금 전액을 담보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금액만큼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공매도 후 담보유지비율 140%를 초과하는 금액은 출금할 수 있으며 차입주식도 담보로 평가됩니다.
- 나.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체결일+2 영업일기준 예수금
 - 2) 차입한 상장주권 : 최근일 종가

7. 담보관리

- 가. 차입공매도의 기준 담보유지비율은 최소 140% 이상입니다.
- 나. 차입시점부터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140%에 미달할 때는 추가담보제공기간 이내에 추가담보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
- 다. 담보비율 평가방법 예시

* 담보유지비율 = 보유담보총액 / 차입금액

- 보유담보총액 : ㉠ 현금(예수금) + ㉡ 차입주문가능금액 + ㉢ 차입공매도금액 -

매수상환금액

- 차입금액 : ㉡ 차입주문가능금액 + ㉣ 차입공매도평가금액 - 매수상환금액

*㉡ 차입주문가능금액 : (차입수량 - 차입공매도수량) * 현재가

*㉢ 차입공매도금액 : 차입공매도단가 * 차입공매도수량

*㉣ 차입공매도평가금액 : 현재가 * 차입공매도수량

1) 차입공매도 없는 경우

예시) 현금 전액 차입시

㉠ 현금	1 억원	차입수량	1,000 주
㉡ 차입주문가능금액	1 억원	현재가	100,000 원

→ 담보유지비율 : (㉠ 1 억원 + ㉡ 1 억원) / ㉢ 1 억원 = 200%

2) 차입공매도 있는 경우

예시) 전량(1,000 주) 차입공매도시

㉠ 현금	1 억원	차입수량	1,000 주
㉡ 차입주문가능금액	-원	매도수량	1,000 주
㉢ 차입공매도금액	1.1 억원	현재가	100,000 원
㉣ 차입공매도평가금액	1 억원	매도단가	110,000 원

→ 담보유지비율 : (㉠ 1 억원 + ㉢ 1.1 억원) / ㉣ 1 억원 = 210%

예시) 일부(300 주) 차입공매도시

㉠ 현금	1 억원	차입수량	1,000 주
㉡ 차입주문가능금액	0.7 억원	매도수량	300 주
㉢ 차입공매도금액	0.33 억원	현재가	100,000 원
㉣ 차입공매도평가금액	0.3 억원	매도단가	110,000 원

→담보유지비율 : (㉠ 1 억원 + ㉢ 0.33 억원 + ㉡0.7 억원) / (㉡0.7 억원 + ㉣0.3 억원) = 203%

라.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익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약된 현금(현금담보 및 매도대금 등)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그 밖의 필요한 수량을 증권시장에서 시가 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반대매수)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환 만기일 익영업일에 현금이 예약되어 있거나 매도결제대금이 입금될 경우 현금으로 채무 변제가 자동 충당됩니다.

- 1) 차입증권의 상환신청을 요구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 2)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마. 추가담보제공기간 및 반대매수일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달기준	T 일	T+1 일	T+2 일
140% 미만	장 마감, 추가담보 제공 요구일	추가담보제공기간	임의상환(반대매수)

*T는 추가담보제공 요구일을 의미

- 1) 추가담보제공기간은 T+1 일이며, 추가담보제공요구일은 담보 부족 발생일입니다.
- 2) 담보비율은 담보부족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추가담보납부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 한 방법 등 요구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통화내용 녹취 방법은 자동 음성안내 통화, 유선 통화 등으로 합니다.
- 4) 추가담보납부기간 동안 담보를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반대매수를 통하여 임의상환 정리를 할 수 있으며 반대매수를 통한 임의상환 정리를 하는 경우, 종목군별로 차등 하여 반대 매매 수량을 산정 합니다. (A,B,C 군 : 15%, D,E,F 군 : 20% 상승 기준)

바. 임의 상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만기일 이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만기일 미상환차입수량)
 - 가) 미상환차입수량 발생 당해 종목
- 2) 추가담보제공기간이내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담보부족발생)
 - 가) 담보부족 발생 당해 종목 중 만기일자가 빠른 종목
 - 나) 담보부족 발생 당해 종목 중 만기일자가 동일한 경우 종목 번호 빠른 종목

■ 고객 상환 및 상환 요청

1. 고객은 차입종목에 대해 중도상환 및 만기일 상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의 방식은 아래처럼 구분 됩니다.

- 매수상환 (매수일 포함+2 영업일) : 차입공매도한 동일 종목을 매수하여 자동 상환
- 현물상환(상환일 당일) : ① 차입한 종목을 매도 하지 않고 상환

② 차입공매도한 동일 종목을 실물 입고를 통하여 상환

※ 차입거래약정 계좌에서는 차입수량을 상환하기 위한 매수상환만 가능하며 일반 매수·매도는 불가 합니다.

※ 매수상환시 결제일에 예수금이 부족한 경우 현금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미수 동결의 대상이 됩니다.

※ 차입전용계좌에 차입잔고와 동일한 종목의 일반잔고를 동시에 보유할 경우 매일 새벽 5 시경에 자동으로 현물상환 처리됩니다.

2. 당사는 고객의 현물상환/입고상환 요청일에 매수상환의 경우 결제일에 해당 차입종목을 고객 계좌 에서 차입 출고 및 출금하며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익월 첫 영업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고 및 출금 합니다.

3. 당사는 차입 종목에 권리 발생 및 상환 요청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환만기일을 포함 5 영업일 전까지 중도상환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고객에게 중도상환요청 후 상환 만기일 포함 5 영업일까지 해당 차입종목을 고객 계좌에서 인도받고, 이에 해당 하는 수수료 및 권리 등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고 및 출금 합니다.

5. 당사의 중도상환요청에 대하여 고객이 상환하지않을 경우 상환 계약불이행사유로 간주되어 반대매수를 통하여 처분 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고객에게 중도상환요청을 하면 요청일을 포함하여 5 영업일까지 차입종목의 만기일이 변경/생성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1. 차입수수료율

수수료율은 종목, 수량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차입수수료징수

가. 차입수수료는 (차입수량 x 차입종목 전일종가 x 차입수수료율 x 1/365) 원 미만 절사의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나. 차입수수료는 종목의 차입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한편넣기) 일할 합산하여 익월 첫 영업일 에 징수 합니다.

※ 수수료등 미징수내역 발생시 계좌폐쇄 불가

다. 차입한 종목의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환일 전일까지 수수료는 징수됩니다.

라. 차입공매도/매수상환에 따른 매매수수료는 오프라인 주문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마. 차입 주식이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그 다음 영업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미상환 차입 주식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하며, 차입수수료의 연체시 차입 수수료금액에 대한 연체 이자가 징수됩니다. (연 9.9%)

구분	만기일 익영업일	상환일
미상환차입금	차입수수료율	연체이율
차입수수료 미납	연체이율	연체이율

■ 권리

1. 차입 중인 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무상증자, 유상증자 등의 권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해당 현금 및 권리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권리 기준일에 보유한 (차입 후 매도되지 않고 계좌에 차입잔고가 남아있는 경우) 차입증권에 발생한 이자, 배당, 무상증자, 유상증자 등의 권리는 고객의 계좌로 입금·입고되며, 이때 발생한 세금에 대해 고객의 계좌에서 원천징수 합니다. 하지만, 고객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공제 전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 권리기준일에 전량 차입공매도한 계좌: 고객계좌에 회사에 반환하는 배당 등 권리금은 세전금액으로 출금
 - 권리기준일에 차입한 수량을 일부 차입공매도한 계좌 : 고객계좌에 회사에 반환하는 배당 등 권리금 세전금액으로 출금 발생. 단, 일부 차입공매도 하지 않은 수량에 대해서는 배당 등 권리금액이 원천징수 되어 입금 처리
3. 권리 발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현금배당, 이자 및 단주대금 : 배당금, 이자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에 해당 금액을 고객 계좌에서 출금합니다.
 - 나. 주식배당, 무상증자 :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 권리 배정 수량 발생 시 해당 주식은 상장일에 해당 차입거래와 동일한 조건의 신규체결건으로 전환 처리됩니다. 또한 권리 배정 수량은 기준일의 [차입수량 *배정비율]로 계산되며 이때 한국예탁결제 원 에서 배정된 권리 수량에 따라 단주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 유상증자 : 유상증자권리가 발생한 종목에 대하여 고객에게 유상청약 신청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대차증권의 유상증자로 발생된 신주인수권/권리락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이익을 신주인수권을 반환(출고) 받거나 기준일 익영업일 다음과 같이 계산된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

(권리락일 전일종가-권리락일 기준가격)*차입수량

 차입한 주식에서 발생한 신주인수권이 입고될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은 장내에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단, 신주인수권의 유상청약은 불가합니다.
 - 신주인수권 반환일 : 신주인수권 입고일
 - 권리락 금액 출금일 : 권리락 익영업일
 - 라. 이외의 권리: 회사는 차입증권에서 발생하는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 액면분할, 액면 병합,감자,합병 등의 권리를 반환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일 및 기준일에 고객에게 중도상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의한 경우 별도의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 기간 이내에 담보를 추가납입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임의상환이 이루어 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2. 차입공매도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고객 계좌 내의 현금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당사에서 차입한 종목과 동일한 종목의 일반잔고를 보유하게 될 경우 차입공매도 및 일반매도 모두 불가하며 차입잔고를 모두 상환해야만 일반잔고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4. 공매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차입공매도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가. 보고의무
 -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 총 수 대비 잔고비율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 1 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평가액 10 억 이상인 경우
 - 나. 공시의무
 - 발행주식 총 수 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경우
 - ※ 고객이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직접 제출 해야 합니다.
 - ※ 고객이 타사에서 거래중인 전체 차입공매도 및 대주 잔고를 총 합산하여야 합니다.
5. 약관등의 변경 및 공시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차입수수료율, 연체이자율, 증거금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대차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그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 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 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 수령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안내

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종류 : 신용거래, 증권 담보용자거래

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라.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차입거래약정 후 차입공매도시 투자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법 제 180 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같은 법 제 429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 208 조의 4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6-34 조에 따라)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다. 유상증자 공시일 다음날부터 최종 발행가 확정일까지 공매도를 한 경우 유상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차입수량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 계약 해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 고객 권익보호 사항

위법계약해지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 조에 따라 당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 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 받은 날부터 8일 이내 제공
민원사항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영업점 및 고객센터 (☎1588-6800) 통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고객 불편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 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또는 금융감독 원(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여부를 확인 후 상품의 특징·위험, 적합한 투자자 여부 등을 충분히 숙지 하였고,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상품의 주요내용과 상품의 위험도, 최대 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 환 또는 환매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설명을 한 내용과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실 및 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판매직원 안내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미래에셋증권 _____

◆ 판매직원 연락처 : _____

◆ 판매직원 : 직위 _____성명 _____ (인 또는 서명)